|  |  |  |
| --- | --- | --- |
| **기업 경외소득 세액공제의 정책문제**  **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2017] 84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기업 경외소득 세액공제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 [2009] 125호)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국내기업 경외소득 세액공제의 정책문제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은 경외에서 오는 과세소득액에 대하여 국별(지역)로 각각 계산(즉 ‘국가(지역)를 구분하고, 항목은 구분하지 않음’)하거나 또는 국별로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계산(즉 ‘국가(지역)와 항목을 구분하지 않음’)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재세 [2009] 125호 문서 제8조에 규정한 세율에 따라 공제 가능한 경외소득세 세액과 공제한도액을 각각 계산한다. 상기 방식은 한 번 선택하면 5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기업이 이전 연도와 다른 방식(이하 ‘신규 방식’)을 선택하여 공제 가능한 경외소득 세액과 공제세액을 계산 시, 해당 기업의 재세 [2009] 125호 문서 규정에 따라 공제를 다하지 못한 이전 연도 잔액에 대해, 세법에서 이월을 규정한 잔여 연한 내에, 신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한도액 중에서 계속하여 이월 공제를 할 수 있다.  2. 기업이 경외에서 취득한 배당금 소득에 대해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외 주식소득으로 공제 가능한 소득세액과 공제한도액을 계산 시, 해당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기업으로서, 재세 [2009] 125호 문서 제6조에서 규정한 지분보유 방식에 한하여 확정한 5등급 외국기업이다. 즉 아래와 같다.  제1등급: 기업이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기업  제2등급부터 제5등급: 단일 바로 위의 등급 외국기업이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이 직접 보유하거나 재세 [2009] 125호 문서 제6조 규정의 지분 보유 방식에 부합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 외국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합계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가리킨다.  3. 기업 경외소득 세액공제의 기타 사항은 재세 [2009] 125호 문서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통지는 2017년 1월 1일자로 집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7년 12월 28일 |  | **关于完善企业境外所得税收抵免政策**  **问题的通知**  财税〔2017〕84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境外所得税收抵免有关问题的通知》（财税〔2009〕125号）的有关规定，现就完善我国企业境外所得税收抵免政策问题通知如下：  　　一、企业可以选择按国（地区）别分别计算（即“分国（地区）不分项”），或者不按国（地区）别汇总计算（即“不分国（地区）不分项”）其来源于境外的应纳税所得额，并按照财税〔2009〕125号文件第八条规定的税率，分别计算其可抵免境外所得税税额和抵免限额。上述方式一经选择，5年内不得改变。  　　企业选择采用不同于以前年度的方式（以下简称新方式）计算可抵免境外所得税税额和抵免限额时，对该企业以前年度按照财税〔2009〕125号文件规定没有抵免完的余额，可在税法规定结转的剩余年限内，按新方式计算的抵免限额中继续结转抵免。  　　二、企业在境外取得的股息所得，在按规定计算该企业境外股息所得的可抵免所得税额和抵免限额时，由该企业直接或者间接持有20%以上股份的外国企业，限于按照财税〔2009〕125号文件第六条规定的持股方式确定的五层外国企业，即：  　　第一层：企业直接持有20%以上股份的外国企业；  　　第二层至第五层：单一上一层外国企业直接持有20%以上股份，且由该企业直接持有或通过一个或多个符合财税〔2009〕125号文件第六条规定持股方式的外国企业间接持有总和达到20%以上股份的外国企业。  　　三、企业境外所得税收抵免的其他事项，按照财税〔2009〕125号文件的有关规定执行。  　　四、本通知自2017年1月1日起执行。  财政部  税务总局  2017年12月28日 |